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334
----------	-----

제안년월일 : 1997년 12월 6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민태승 의원의 3인

1. 수정이유

- 시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위원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 시세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제14조 제8항)
-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안제14조의 2)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함(안제14조의 3)
- 시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등 지급규정을 정함(안제14조의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세에 관한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제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제 2항의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중 세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제14조의 2를 제14조의 3으로 하고 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산사 및 서기 약간명을 들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안제14조의3(종전의 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3명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시세성실 납세자

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수당등지급) 시세심의위원회 및 각분과위원회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제목중 “일반적인”을 삭제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 준의 결정 기타 지방 세 운영에 관한 사항 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 회)①시세에 관한… …………… …………… ……………시세제도 등 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시세심의위원회 (이하이조에서“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제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이의신 청분과위원회와 과세 표준분과위원회를 둔 다. 이 경우 분과위원 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아니하는 사 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 으로 위원회의 의결 로 본다.	②…………… ……………시세제분 과위원회와 시세이의 신청분과위원회, 과세 표준분과위원회를 둔 다 이 경우 분과위원 회와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 위원회의 의 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 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③제2항의 경우 분과위원회 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 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 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 원회의 의결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20인 이상 30인”.....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⑧ <u>위원회의 위원중 세무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하며</u> <u>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u>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u>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u> <u>장이 위촉한다.</u> 1. <u>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u> <u>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u> <u>는 5급이상의 공무원</u> 2. <u>과사, 검사, 군법무관 또</u> <u>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u> <u>상 종사한 자</u> 3. <u>공인회계사, 세무사, 감</u> <u>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u> <u>3년이상 종사한 자</u> 4. <u>공인된 대학에서 법률</u> <u>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u> <u>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u> <u>직에 종사한 자</u> 5. <u>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u> <u>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u> <u>과 경험이 풍부한 자</u>	
	<신 설>	제14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①<u>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u> <u>위원장1과 부위원장 1인</u> <u>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u> <u>인이하로 구성하며 시세</u> <u>심의위원회위원장이 위원</u> <u>중에서 지명한다.</u> ②<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u> <u>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u> <u>할한다.</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③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3명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시세성실 납세자	
	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④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 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위원장은 적부심사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및 서 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 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4(수당등지급) 시세심의위원회 및 각분과위 원회와 파세전적부심사위원 회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 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 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비고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세심의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시행전 제14조의 제2항의“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②(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	